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89
----------	-------

발의연월일 : 2026. 7. 21.

발 의 자 : 서영교 · 정준호 · 임오경

북기왕 · 김승원 · 박균택

김영호 · 허 영 · 박홍배

박지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 중 기관장이 비상임인 유일한 기관으로, 그동안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해 왔음.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비상임 체제는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경우 선거관리 업무에 충분히 전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운영과 주요 집행 업무는 사실상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위원장의 실질적인 통솔과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정당에 관한 사무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할·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올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는 투표지 축소 인쇄 결정이 위원회 의결 없이 일부 간부의 전결로 처리되는 등 내부 통제와 의사결정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고, 양적·질적으로 확대된 선관위 직무 및 규모, 책임있는 운영 및 신속한 의사결정 필요성 등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명확히 하여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위원회 내에 신설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인 자체 감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委員의 任命 및 위촉)”을“(위원의 임명 및 위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7항) 전단 중 “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을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8항) 본문 중 “第7項의 規定”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9항) 중 “第8項의 規定”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중전의 제10항) 중 “第7項의 規定”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중전의 제11항) 중 “第7項의 規定”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중전의 제12항) 본문 중 “第3項 但書の 規定”을 “제5항 단서”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선출 또는 지명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마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第3項”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상근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외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6조제1항 중 “中央選舉管理委員會와 市·道選舉管理委員會”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1人”을 “2인”으로 한다.

제1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6(감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 선거·정당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등 주요 사무
2. 인사채용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무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부정청탁 등 주요 비위행위
4. 성범죄 사건
5. 국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감사요구 사항
6. 감사위원회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7.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3명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
2.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명
3. 감사원장이 추천하는 감사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1명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위원을 제외한 감사위원회 위원은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추천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

원이 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4. 선거관리위원회와 연관된 직무를 하거나 하였던 사람. 이 경우 연관된 직무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⑦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⑧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매년 감사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⑩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선출 또는 지명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4條(委員의 任命 및 위촉) ① (생 략) <u><신 설></u>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① (현행과 같음)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선출 또는 지명될 수 없다.</u> 1. <u>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u> 2. <u>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u> 3. <u>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u>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u>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신 설>

② ~ ⑥ (생 략)

⑦ 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따라 政黨에서 추천하는 委員 (이하 "政黨推薦委員"이라 한다)은 國會에 交渉團體를 구성된 政黨(1政黨이 1交渉團體를 구성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각 1人씩 書面으로 추천 한다. 이 경우 國會에 交渉團體 를 구성된 政黨이 3을 초과하 거나 그 미만이 되어 第2條第1 項第2號 내지 第4號에 정한 委 員의 定數를 초과하거나 부족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現員을 委員定數로 본다.

⑧ 第7項의 規定에 의한 政黨 推薦委員의 추천은 당해 黨部 가 推薦政黨의 黨員이 아님을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 의 역할을 마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 이 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⑧ (현행 제2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⑨ 제4항부터 제6항까지-----

⑩ 제9항-----

증명하는 書類와 本人承諾書
및 住民登錄票 抄本을 첨부하
여 書面으로 제출한다. 다만,
國會議員選舉權이 있는지의 여
부에 대하여는 中央選舉管理委
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후에 調査할 수 있다. 이
경우 "黨部"라 함은 政黨法 第
3條의 規定에 의한 중앙당과
시·도당을 말하며 추천할 당
해 黨部가 없을 때에는 그 上
級 黨部가 추천한다.

⑨ 政黨推薦委員에 缺員이 생
긴 때에는 關係選舉管理委員會
는 第8項의 規定에 의한 당해
黨部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國會議長은 第7項의 規定에
의한 交渉團體를 구성된 政黨
에 變動이 있을 때에는 이를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통보하
여야 하며, 中央選舉管理委員會
는 당해 政黨과 그 下級選舉管
理委員會에 이를 즉시 통지하
여야 한다.

⑪ 第7項의 規定에 따라 委員
을 추천한 政黨이 國會에 交渉

-----.

-----.

-----.

⑪ -----

-- 제7항 -----
-----.

⑫ ----- 제9항 -----

-----.

⑬ 제9항 -----

團體를 구성할 수 없는 政黨이 되고 새로 交渉團體를 구성하게 된 政黨이 있는 경우에는 그 政黨에서 추천한 者가 委員으로 위촉될 때까지 在任한다.

⑫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期間開始日 또는 國民投票案公告日 후에 당해 또는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의 政黨推薦委員의 推薦書를 접수한 때에는 第3項 但書의 規定에 따라 24時間 이내에 위촉하여야 하며, 24時間 이내에 위촉하지 아니할 때에는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이 이를 위촉하고 각 上級選舉管理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投票日 또는 開票開始日 직전에 交替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投票日 또는 開票開始日 2日전에 당해 政黨의 交替推薦이 있어야 하며 投票日 또는 開票期間중에는 이를 交替할 수 없다.

⑬ (생략)

第5條(委員長) ① 各級選舉管理委

[illegible]

⑭

제5항 단서-----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 background is white, and the lines are light gray. There are no margins or additional markings present.

⑮ (현행 제13항과 같음)

第5條(委員長) ① -----

員會에 委員長 1人을 둔다.

<후단 신설>

② ~ ③ (생략)

④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副委員長 1人을 두며 당해選舉管理委員會委員중에서 互選한다. 이 경우 勤務期間, 實費補償 및 委囑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다만,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공직선거법」 第173條(開票所)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하나의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 2개이상의 開票所를 설치하는 경우의 選舉管理를 위하여 第4條(委員의 任命 및 위촉)第3項의 委員定數에 불구하고 開票所마다 地方法院長 또는 支院長이 추천하는 法官 1人을 당해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 副委員長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常任委員 또는 副委員長이

-----.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상근으로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제5항-----

-----.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그 職務를 代行하며 委員長・
常任委員・副委員長이 모두 事
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중에서
臨時委員長을 互選하여 委員長
의 職務를 代行하게 한다.

第6條(常任委員) ① 中央選舉管理
委員會와 市・道選舉管理委員
會에 委員長을 補佐하고 그 命
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事務를
監督하게 하기 위하여 각 1人
의 常任委員을 둔다.

②・③ (생략)

<신 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
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외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
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
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
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
게 한다.

第6條(常任委員) ① 각급선거관리
위원회-----

-----2인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6(감사위원회) ① 선거관
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 선거·정당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등 주요 사무

2. 인사채용 및 예산집행에 관
한 사무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
령, 부정청탁 등 주요 비위행
위

4. 성범죄 사건

5. 국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감사요구 사항

6. 감사위원회가 감사가 필요하
다고 의결한 사항

7.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3
명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지명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

2.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
명

3. 감사원장이 추천하는 감사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1명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위원을 제외한 감사위원회 위원은 법조계 · 학계 · 언론계 · 경제계 · 여성계 ·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추천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4. 선거관리위원회와 연관된 직무를 하거나 하였던 사람. 이 경우 연관된 직무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제

3항 후단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⑧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매년 감사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